

「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 조례안

의안 번호	216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 7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폐지이유

-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「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표준(안)이 폐지됨. (고용직 공무원 직종 폐지)

□ 주요내용

- “동 조례 폐지”

□ 폐지조례안 : 붙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(공무원의 구분)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7. 21.(목) ~ 8. 1.(월)

□ 사전심의(결과) : 원안가결

- 인사위원회 심의 : 2011. 8. 31.(수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폐지 조례안

안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안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권오달
	담당계장 직위·성명	인사계장 박부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유성 (행정 3107)

기타 참고사항

지방공무원과 - 1544호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폐지조례안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(표준안)는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

제정	1981.11.14	지기	180 ~18640호
개정	1983. 1. 6	지기	180 ~ 100호
	1984. 7. 26	지기	180 ~ 9346호
	1985. 1. 5	지기	180 ~ 47호
	1985.10. 7	지기	01100-11982호
	1986.12.27	지기	01100-15708호
	1989. 1. 25	지기	01100- 671호
	1989. 5. 1	지기	01100- 4036호
	1989. 4. 15	지공	12101- 189호
	1998. 9. 17	운영	12100- 450호
폐지 2011. 5. 18 지방공무원과-1544호			

제1조 (적용범위)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(이하 “고용직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 (임용권자)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공무원 ·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. <개정 86.12.31>

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· 전보 · 휴직 · 복직 · 면직 · 파면 · 해임 · 정직 ·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. <개정 89.5.1>

제3조 (신규임용)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. <개정 89.5.1>

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정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. <개정 89.5.1>

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·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 (전보임용) 고용직공무원은 동일직명에 한하여 전보임용할 수 있으며,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 · 출입의 방법에 의한다. 이 경우에 전보임용원칙, 전보의 제한 및 전 · 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86.12.31]

제4조의2 삭제 <96.4.15>

제5조 (근무상한연령)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.

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

[전문개정 83.1.6]

③삭제 <86.12.31>

제6조 (당연퇴직)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[전문개정 83.1.6]

제7조 (면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
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월이 된 때

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

제8조 (휴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. 다만,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8조의2 (휴직기간)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

제8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②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

제9조 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 고용직공무원이 제8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○○(광역시·도·시·군·구)의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·사업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(이하 “휴직자 정원관리단위”라 한다)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○○(광역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가(이) 조정임용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단위기관의 고용직 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면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징계)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.
② 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85.10.7]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지방고용원(휴직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감봉처분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감봉처분중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4조 (폐지규칙) ○○(광역시·도·시·구) 지방고용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83.1.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84.7.26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종 잡무수는 2종 보조수(2종 잡무수 중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종 사역수)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85.1.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85.10.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86.12.31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아래표의 원편란의 직에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각각 이 조례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현 행 직 명	개 정 직 명	현 행 직 명	개 정 직 명
선 로 공 (1종)	보 선 원 (1종)	영 사 공 (1종)	영 사 원 (1종)
건 축 공 (1종)	건 축 보 조 원 (1종)	화 공 보 조 공 (2종)	화 공 보 조 원 (2종)
목 공 (1종)	목 공 원 (1종)	영 리 수 (2종)	영 리 원 (2종)
토 석 공 (2종)	토 석 원 (2종)	원 예 수 (2종)	원 예 원 (2종)
관 공 (2종)	배 관 원 (2종)	항 내 선 박 원 (1종)	선 박 원 (1종)
건 축 보 조 공 (2종)	건 축 보 조 원 (2종)	보 건 조 무 수 (2종)	보 건 보 조 원 (2종)
초 자 공 (2종)	사 역 원 (2종)	간 호 보 조 수 (2종)	간 호 보 조 원 (2종)
철 공 (2종)	사 역 원 (2종)	보 조 수 (2종)	보 조 원 (2종)
통 신 공 (1종)	통 신 보 조 원 (1종)	제 품 수 (2종)	제 품 원 (2종)
전 화 교 환 원 (1종)	교 환 원 (1종)	역 무 수 (2종)	역 무 원 (2종)
전 공 (1종)	전 기 보 조 원 (1종)	사 역 수 (2종)	사 역 원 (2종)
난 방 공 (1종)	난 방 원 (1종)	항 무 수 (2종)	사 역 원 (2종)
기 계 공 (1종)	기 계 보 조 원 (1종)	조 기 수 (2종)	사 역 원 (2종)
철 도 공 (1종)	기 계 보 조 원 (1종)	간 수 (2종)	건 널 목 안 내 원 (2종)
인 쇄 공 (1종)	인 쇄 원 (1종)	조 발 수 (2종)	조 발 원 (2종)
석 판 인 쇄 공 (1종)	인 쇄 원 (1종)	전 달 수 (2종)	전 달 원 (2종)
정 비 공 (1종)	정 비 원 (1종)	조 리 수 (2종)	조 리 원 (2종)
기 계 보 조 공 (2종)	기 계 보 조 원 (2종)	경 비 수 (2종)	경 비 원 (2종)
도 공 (1종)	도 장 원 (1종)	생 산 지 도 수 (2종)	생 산 지 도 원 (2종)

③(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

부칙 <89.1.25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임용대상자 및 신규임용연령에 대한 경과조치) 개정조례 별표에서 신설 규정한 「방범원」의 임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당시 경찰서·지서 또는 파출소에서 재직중인 방범대원에 한하여 신규임용하고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 <89.5.1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 삭제에 따른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(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)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98.9.17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·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, 1999년 12월 31일자는 1999년 6월 30일에, 2000년 6월 30일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.

[별 표] <개정 89.5.1, 96.4.15, 98.9.17>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

구 분	1 종	경 노 무
직 명	지 도 원	사 환
근 무 상 한 연령	57세	57세

비 고 : 지도원은 조례 제 호(1996년 월 일 공포)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